

별첨 4

제출서류 목록 ..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

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,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| 연번 | 증빙서류 | 제출대상 및 내용 | 발급일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주민등록초본 (주민등록등본 아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자 전원 (생년월일만 표기) - (포함 사항) 병역사항(남성), 개명사항(해당자) | '26.3.16. ~ '26.4.16. |
| 2 |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인어학성적 입력자 - (어학성적 사전등록자) 정부24에서 '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' 발급 및 제출 | 기한 없음 |
| 3 | 면허(자격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면허 또는 자격사항 입력자 - 발급번호 및 바코드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명서 - (인정)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1건만 인정하며, ¹⁾ 면허(자격)번호가 부여되었거나 ²⁾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, 기간 이내의 건 - (불가) 면허(자격)증 발급 신청서 / 화면 캡처본 / 면허(자격)번호 및 취득 일자가 없는 시험 합격 확인서 등 | |
| 4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지원대상자 -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| |
| 5 | 장애인 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 해당자 - 국가유공장애의 경우, 상이등급이 기재된 '국가유공자 확인서' 또는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서 제출 가능 | '26.3.16. ~ '26.4.16. |
| | 중증장애인 확인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중증장애인 해당자 - 국가유공장애의 경우, 상이등급(3급 이상)이 기재된 '국가유공자 확인서' 제출 가능 | |
| 6 |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(본인 명의로 발급) | |
| 7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부모가족 해당자(본인 명의로 발급) | |

| 연번 | 증빙서류 | 제출대상 및 내용 | 발급일자 |
|----|--|---|---|
| 8 | ①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문화가족 해당자 - ①, ②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필요 - 기본증명서¹⁾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²⁾ <li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">1)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기준 발급 <li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">2)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- 필요 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| '26.3.16. ~ '26.4.16. |
| | ② 기본증명서 ¹⁾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²⁾ | | |
| 9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북한이탈주민 해당자(본인 명의로 발급) | '26.4.16. |
| 10 |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(동 자립수당)통지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해당자 - 명시된 서류가 발급 불가할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제출 | |
| 11 | 의사진단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각장애인 기준 공인어학성적 입력자 - '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' 또는 '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' 등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| '24.1.1. ~ '26.4.16. (단, 지원자의 청각장애 등록일 이후) |